

CWC 정보



- ◇ 성공적인 제3차 평가외의를 양아여
- ◇ 와약무기금지협약(CWC)의 미래 거버넌스
- ◇ 와약무기금지협약 이행 연왕
- ◇ 진용외 소식
- ◇ 와약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연왕



CWC

정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2013. 4. 8~4. 19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3차 평가회의(화학무기금지협약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회의로서 5년마다 개최)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의 협약 이행에 관해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협약 운용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는 2013년의 특별이슈가 되는 협약이행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이번 평가회의에 대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조건들과 향후 협약의 운용에 관한 전문가의 기고를 수록하였다. <편집자 주>



차 레

성공적인 제3차 평가회의를 향하여	존 허트	4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미래 거버넌스	장 파스칼 잔더스	6
변화하는 글로벌체제에서의 OPCW		7
향후 목표		9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 현황		9
1. 협약 가입		9
2. 화학무기 폐기		10
3. 산업 검증과 비확산		11
4. 그 밖의 이행 동향(제17차 당사국총회 결과)		11
진행회 소식		12
2012년도 CWC 업체담당자 교육		12
화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서울워크숍 개최		13
제17차 CWC 당사국총회 참석		13
정기신고서(2012년도 연간실적) 제출		13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현황		14



성공적인 제3차 평가회의를 향하여

존 허트(John Hart) (SIPRI)¹⁾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관한 제3차 평가회의의 준비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광범위한 일련의 원칙, 목표 및 대안이 포함된 계획서 및 정책성명 마련이 ‘착수되었다’. 이 글은 ‘성공적인 결과’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결정문 초안의 선정 및 준비를 위해 가능한 접근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성공적인 결과의 판단기준은 아래를 포함한다.

1. CWC 체제에 무해함(예. 기관의 전문성 및 과거유산을 해치지 않고, 화학전을 금지하는 법적 규범을 저해하지 않음)
2. 제대로 관리되는 준비작업(관련 주체 간 건설적 회의 및 협의 참석, 시의 적절하게 획득 가능한 관련문서 등)
3. 광범위한 공공, 정부 커뮤니티를 포함 CWC 체제의 타당성을 유지 및 강화하도록 하는 평가회의의 결과를 보장

당사국들이 CWC의 목표와 목적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제3차 평가회의 결정문 초안 마련 및 승인과 관련해 최소한의 저항만 있는 길을 따름으로써 야기되는 고착상태의 위험도 피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회의 준비를 담당하는 주체가 매우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평가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선호가 어떠한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계획과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비 핵심 요소에 대한 절충은 평가회의 최종 도입단계까지 남겨두는 쪽이 최상일 것이다. 평가회의 고위 관계자들(예. 의장, 위원회 의장, 의장단(Friends-of-the-Chair))이 이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불가피하게 계획단계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상적으로 핵심 결정사항이 평가회의 시작 전에 가려지고, 이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사전 이해 없이는 합의가 어렵게 된다.

2011년 OPCW 사무총장 특별자문단이 CWC의 이행을 검토한 후 최종보고서²⁾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축된 화학무기 폐기 이후 조약의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

1) 존 허트(John Hurt)는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다. 이 글은 기고자 개인적인 것이며, SIPRI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2) OPCW의 미래 우선순위에 관한 자문단 보고서(사무총장 문서), OPCW doc. S/951/2011, 2011.7.25.



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사국,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와 함께 OPCW 사무총장은 제3차 평가회의 시작 전 해당 보고서 및 권고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평가회의 결정문 초안의 선정 및 준비를 위한 한 가지 가능한 접근법은 이 최종보고서에 볼드체로 표시된 텍스트의 45개 사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텍스트는 본 조약의 미래 성공과 특히 관련되는 것으로 명시된 다양하고 균형적인 이행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텍스트는 본질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다(예. 2년 예산 주기의 바람직함). 또 일부 텍스트는 과정 지향적이다(예. OPCW 기술사무국의 당사국 기술지원 제공). 그러나 또 다른 텍스트들은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Annex on Chemicals)의 검증 및 주기적 평가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개출처 정보의 역할 등 진화하는 국제안보환경을 감안하여 검증에 관한 개념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이 개념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평가회의에 앞서 협의를 위한 좋은 기초는 당사국 및 관련 관계자들이 볼드체로 표시된 텍스트에 언급된 사항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다른 결정문 초안을 선정하는 것이다. 당사국들은 그에 따라 자신들이 선호하는 ‘위시리스트’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종종 고착상태에 이르게 되는 서식관련 과정을 더 많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회의 준비과정을 처리하는 책임자들은 이 사안에 관해 비공식적으로 중앙정부, 지역간부, 그 밖의 관련주체들의 의사를 타진할 수도 있다. 그러면 회의 시작 전 논의에서 지역그룹 국가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간략한 선택적 문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전쟁, 시민전쟁, 대규모 인권침해, 혁명 및 봉기, 반란, 테러리즘…[그리고]…조직범죄 간 경계가 흐려진다’는 최종보고서의 의견, 그리고 불법무장단체, 군지도자, 민병대, 지원병, 용병, 민간군사기업, 테러리스트, 범죄단체의 무장 갈등의 존재가 CWC 체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이상적으로는 평가회의 결과로 고려될 수 있다.

텍스트 초안이(사실상 권고안이 아닌) 엄밀한 사전적 정의에서의 ‘의사결정’에 더 가까운 양상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결정사항은 실질적으로 협약 이행 관행에서의 일관성 결여를 해결해야 하며, 행정적이고 과정 지향적인 협약 이행 측면을 간소화 및 강화해야 한다. 이 결정사항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축된 화학무기의 완전한 폐기 이후 CWC 체제가 지향하게 될 미래 본질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기고자의 관점에서 CWC 체제를 유지 및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려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무능화제의 개발 및 사용이 이 조약에서 규정한 금지조항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

2. OPCW 기술사무국의 관심을 끌 ‘화학무기 사용’ 추정에 대한 당사국의 대응이 그러한 무기의 위험에 관한 인식을 공적영역에서 제고하기 위한 보고메카니즘에서 더 투명해질 수 있는지의 여부

적절한 정치적 기술적 논의의 장 안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계속적이고 진지하게 고려 및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과정은 CWC의 목표와 목적의 중요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차 평가회의는 이상적으로 범위, 초점 및 운용상의 유용성의 측면에서 균형적인 일련의 결정사항을 고려하고 채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결정사항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향후 CWC 체제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폭넓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미래 거버넌스

장 파스칼 잔더스(Jean Pascal Zanders)³⁾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은 군축조약이다. 이 협약은 모든 화학무기(CW), 관련 장비 및 설비의 완전한 제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약은 군사 독트린에서 화학무기류를 금지한다. 전시상황, 다른 국가에 의한 화학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 억지력 확보 목적 등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CWC 당사국은 화학무기를 재무장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축’에는 과거지향적(backward-looking) 차원과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차원,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게 된다. 제3차 평가회의 전날 당초의 예상은 첫 번째 차원인 무기 제거가 2012년 4월까지 달성될 것이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두 번째 차원 즉 미래 군비 방지 쪽으로 이 기구의 자원 대부분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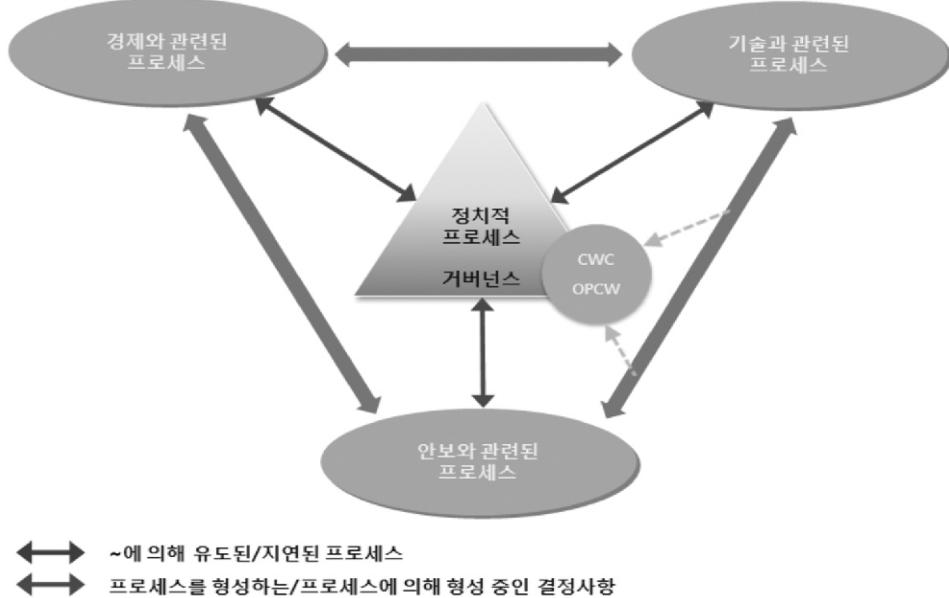
협약 발효시점부터의 무기 제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엄격한 폐기시한은 2012년에 다른 차원을 실행하는 쪽으로 상당히 빠르게 이동해 갈 것임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다양한 정치적, 기술적, 재정적 문제로 인해 최종 폐기 작업은 적어도 10년은 퇴행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CWC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는 큰 차질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또한 군비 방지로의 점진적 전환을 설계할 수 있는 또 다

3) 장 파스칼 잔더스(Jean Pascal Zanders) 박사는 유럽안보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의 군축 및 비핵산 분야 선임연구원이다. 본 기고에 제시된 견해는 개인적인 것이며 EU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른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환은 단지 예산 재할당이나 OPCW 기술사무국의 인력 수준, 사찰관 프로필을 변경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과학적 진보, 산업생산 및 과학연구가 발전해온 방식, CWC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개도국의 선진국 지위로의 승격, 지난 수십년 간 지속되어온 양극화 및 다극화 세계질서 대신 경쟁적이고 다중심적인 글로벌체제의 부상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정교한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변화하는 글로벌체제에서의 OPCW

CWC는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한다. OPCW는 전적으로 정부 간 기구이다. 3개의 주요 프로세스가 CWC가 기능해야 하는 맥락을 지속적으로 형성한다. 과학 및 기술, 경제 및 무역 그리고 안보이다(차트 참조). 이들 영역 각각의 상호작용이 점점 더 국경을 초월해 나타나며, 국가보다 경제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역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어, 그 결과 서로를 진전시키게 한다. 예를 들어 과학 및 기술 혁신의 진보는 상업화가 가능하고 시장성이 있는 신제품과 프로세스를 창출한다. 그러면 반대로 시장 수요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를 이끈다. 혁신의 자연적 확산, 무기 거래 및 기타 확산의 역학관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무기 개발, 이 신무기 및 핵심 기술에의 접근 증가와 함께 안보 우려가 생겨나게 된다. 위협에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이 대응책은 자체적으로 시장 수요 등을 창출해낸다.



탈냉전시대에 국가들은 무역에 안보적 강행규정을 부과할 능력도 떨어지고 경쟁력을 이유로 그럴 생각도 별로 없다. 국가들은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그럴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 프로세스를 통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껏해야 국가는 비확산정책, 제품 및 (국제무역을 포함한)프로세스의 질 및 완전성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는 다른 형태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또 재정정책을 활용하여 혁신 및 투자를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만약 정부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친다면, CWC가 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기회는 주장컨대 훨씬 소원해진다. OPCW 내부논의는 기술 및 안보관련 프로세스에 의해 제기되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간이 갈수록 그 논의의 결과의 질은 CWC의 항구적 관련성을 결정할 것이다.

어찌하여 아래 요약된 프로세스는 미래에 CWC에 더 확연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 답은 협약이 금지하지 않는 목적으로의 독성 화학물질의 무역과 화학의 평화적 적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CWC의 제6조 및 제11조의 이행에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의 대부분은 촉진 및 규제 사이의 결합과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이 협약이 일반 목적 기준, 새로운 보고 및 감시 도구의 조작화를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 무역의 검증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다른 형태의 검증 인력 및 사찰관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재정 위기로 인해 더 심화된 현재의 추세는 비용 절감이다. 이로 인해 현재 화학무기 폐기작업을 감독하는 자들이 향후 조약 수요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춘 검증 인력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볼 때 크지 않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OPCW는 조사를 실시하고 회원국의 준수를 보장할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두 가지 주요 전략이 실행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첫째, CWC 검증체제는 각 기술사무국과 국가담당기관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 모두에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각 차원에 자체적인 임무 및 도구가 있지만, 이들은 상호 연결되며 서로를 강화시킨다. 만약 기술사무국의 역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각 국가담당기관이 져야 하는 CWC 관련 무역 및 다른 형태의 기술 이전에 관한 감시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 상대국의 국가담당기관 간 상호작용을 더 강조하는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패턴뿐 아니라 다른 보고양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국가담당기관이 그러한 새로운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행지원프로그램이 전문지식을 다룰 수는 있겠지만, 특정 당사국의 제한된 인력 및 재원이 훨씬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사국이 준수 감독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수행하려면, CWC의 현 이전통제메커니즘(협약 제6조 및 검증부속서의 해당 조항)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사무국의 조직 개편 또는 기술사무국과 국가담당기관 간 업무분업의 재조정의 두 가지 선택에 대한 철



저한 비용-수익 분석이 단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둘째, OPCW는 다층 상호연결 네트워크로 구성된 미래 거버넌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국제기구(예, 국제무역기구, 국제관세기구 등) 및 산업계, 과학계, 그 밖에 시민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는 CWC의 핵심 규범을 통해 표현되는 공동의 이해에 기반을 두고 수평적으로 (예. 국가, 전문단체, 국제기구들 간에) 또 수직적으로 (다른 차원의 주체들 간에) 형성된다. OPCW가 조직적으로 폭넓은 사회로부터 CWC의 미래 방향에 관한 조언을 얻고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상호작용은 무역 및 적법한 목적의 기술 이전을 촉진, 감독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전략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를 전략은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다.

향후 목표

CWC가 합법적 도구로서는 무기한이나, 인간이 만든 구성체로는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이 핵심 고려사항이다. 만약 당사국들이 단지 규범에만 초점을 맞춘 채 당사국들이 공동의 또는 개별적인 CWC의 이행 및 적용에 상당한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프로세스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이 협약은 불가피하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거나 관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CWC는 안보, 국내정치, 국제협력, 무역, 개발 등 다른 차원에 영향을 발휘한다. 각각의 차원에서 당사국들이 특정 국내적 또는 국제적 이해를 갖는다. 각각의 차원에는 또한 다른 이해관계자가 있다. 만약 OPCW가 조약 관련 기술 및 그 적용에 관해 전세계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임무를 수행하려면, OPCW는 자국의 미래를 형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모든 관련 당사국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학무기금지협약 이행 현황

1. 협약 가입

1997년 4월 협약이 발효된 이후 전 세계의 98%가 협약에 가입되어 188개국이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회원국이 되었다.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8개국이며 이들 나라에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가

입을 촉구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기술사무국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및 시리아, 미얀마와도 꾸준히 접촉을 하는 등 보편성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회원국 : 188개국(2012. 12. 31 현재)
- 비회원국 : 8개국
 - 서명국(2) : 이스라엘, 미얀마
 - 비서명국(6) : 앙골라, 이집트, 북한,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2. 화학무기 폐기

화학무기를 신고한 7개 당사국(알바니아, 인도, 이라크, 리비아, 러시아, 미국, A당사국)은 전체 71,196톤의 매우 유독한 화학작용제를 함유한 탄약과 용기를 포함하여 867만개를 폐기해야 한다. 알바니아, 인도 및 A당사국은 폐기를 완료하였다.

OPCW는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과정을 검증한다. 이와 동시에 당사국들은 화학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신고된 화학작용제 71,196톤의 78.01%인 55,539톤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되었고(2013.01.23 현재), CWC에 관련된 867만개의 화학탄약과 용기 중 45.56%인 395만개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되었다(2013.01.23 현재).

〈 화학무기 신고와 사찰 현황 〉

	신고 시설이 있는 당사국	신고 시설	사찰 수행	피사찰 장소
화학무기 생산시설(CWPF)	13	70	451	70
화학무기 폐기시설(CWDF)	6	35	1,556	35
화학무기 저장시설(CWSF)	7	35	468	35
벼려진 화학무기(ACW)	3	34	80	34
오래된 화학무기(OCW)	15	49	111	49
계	-	223	2,666	223

- 협약 발효 이후(1997년 4월) 2013년 1월 23일까지, OPCW는 2,666회의 화학무기 관련시설 사찰을 포함하여 86개 당사국 영토에서 5,035회의 사찰을 수행했다.
- 100%의 신고된 화학무기 비축량의 재고를 조사했고 검증되었다.
- 180개의 최초신고서가 제출되었다.
- 100%의 신고된 화학무기 생산시설(CWPF)이 비활성화 되었다. 모든 시설은 전례 없이 엄중한 검증체계에 따라 검증을 받는다. OPCW에 신고된 70개의 CWPF 중 64개가 폐기되었거나(43개)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되었다(21개). 13개 당사국(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중국, 프랑스, 인도, 이란, 이라크, 일본, 리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영국, 미국 및 또 다른 당사국)에서 CWPF를 신고했다.



3. 산업 검증과 비확산

세계의 화학산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존하는 화합물을 제조한다. 매우 평범한 일부 화학물질을 오용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의 추가 합성을 통해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OPCW는 각국 정부와 더불어 전 세계 화학산업계의 지원으로 화학무기의 확대를 막고 있다.

〈 신고와 사찰(CWC 제6조) 〉

	신고 시설이 있는 당사국	신고 시설	사찰 수행	피사찰 장소
목록 1(1종화학물질)	22	27	237	27
목록 2(2종화학물질)	39	481	615	167
목록 3(3종화학물질)	35	445	365	413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DOC/PSF)	80	4,429	1,152	4,279
계	-	5,382	2,369	4,882

- 1997년 4월부터 2013년 1월 23일까지, OPCW는 2,369회의 산업시설 사찰을 포함하여 86개 당사국 영토에서 5,035회의 사찰을 수행했다.
- 전 세계 4,882개의 산업시설이 사찰대상이다.

4. 그 밖의 이행 동향(제17차 당사국총회 결과)

2013년도 OPCW 예산

2012.11.26~30간 개최된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OPCW의 지출예산 총액은 69.8백만 유로이며, 당사국의 분담금 납부 66.5백만 유로와 기타 수입 3.3백만 유로로 수입예산이 편성되었다.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OPCW의 분담율(2.26%)에 따라 당사국의 분담금 납부 금액 중 1,513,449 유로로 결정되었다.

2013~2015년 임기의 집행이사국에 우리나라 재 선출

우리나라는 금번 제17차 총회에서 2013.5~2015.5 임기의 집행이사국에 재 선출하였으며, 1997년 이래 지속적으로 집행이사국을 수임하고 있다.

화학산업 및 정치·안보적 이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2년 임기의 이사국이 선출되며, 금번 아시아 5개국 자리에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선출됨었다.

협약 보편성 촉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등 친서방 진영은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시리아의 화학무기 보유 인정(2012.7.23)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절대반대 및 북한을 비롯한 8개 미가입국의 협약가입을 촉구하였다.

제3차 평가회의 준비

2013년 4월 개최될 예정인 제3차 평가회의의 준비(Open-Ended Working Group)의 장인 알제리 대사가 그간 회의경과를 보고하였으며, 2013년 1월 중순 의장보고서를 회람한 후 1월 말부터 2단계 준비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산업분야 국제사찰 횟수

2013년도 산업분야 국제사찰 횟수는 전년보다 10회 증가한 229회(목록 1 시설 11회, 목록 2 시설 42회, 목록 3 시설 29회, 기타 화학물질 생산시설 147회)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2012년도 OPCW 예산안 승인 시 결정된 사항이며, 2014년에는 총 241회의 사찰이 시행될 예정이다.

진흥회 소식

□ 2012년도 CWC 업체담당자 교육

본회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원활한 국내이행을 위하여 CWC 신고·사찰대상업체 실무 담당자들의 정기신고 및 국제사찰 등의 의무 이행 관련 지식수준 향상과 업체 간 실무 경험 교류의 장을 마련키 위하여 2012년도 화학무기금지협약 업체담당자 교육을 2012년 11월 23일~24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식경제부의 <2012년 전략물자 무역주간(Strategic Trade Week 2012)>을 맞아 공동 인식제고를 위해 해당 기간 중에 이 교육행사를 병행으로 진행하였으며, 화학무기금지협약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한 부류로서 공통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 협력 관계를 통한 정보제공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교육에는 업체 및 관련 기관 50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 화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서울워크숍 개최

본회는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를 대표하여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기술사무국과 공동으로, 협약과 관련한 화학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동남아 6개국과 함께 2012년 11월 13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화학산업의 현황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대해 소개하였고, 참가국 대표(13명)들은 협약의 이행에 관해 사례 발표와 토의를 하였으며, 국내 화학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화학산업 발전현황과 전망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번 워크숍의 개최로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의 모범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국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산업발전 경험 등을 동남아국가에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동남아 시장진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제17차 CWC 당사국총회 참석

본회는 지난 2012년 11월 26일~30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7차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OPCW 사무총장 보고 및 주요 당사국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013년도 OPCW 프로그램 및 예산안, 2013년부터 2년 임기의 집행이사국 선출 및 협약 보편성, 제3차 평가회의 준비 등이 승인 및 보고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2015년 임기의 집행이사국으로 재 선출됨에 따라 1997년 협약 발효 이래 지속적으로 집행이사국을 수임하고 있다.

□ 정기신고서(2012년도 연간실적) 제출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화학물질(1·2·3종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2012년 연간실적에 관한 신고서를 2013년 2월 15일

까지 관련 업체들로부터 신고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업체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OPCW 기술사무국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국가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화학무기금지협약 회원국 현황

2013년 1월 31일 현재

No.	국 가 명	서명일자	비준일자
1	Afghanistan	1993-01-14	2003-09-24
2	Albania	1993-01-14	1994-05-11
3	Algeria	1993-01-13	1995-08-14
4	Andorra		2003-02-27
5	Antigua and Barbuda		2005-08-29
6	Argentina	1993-01-13	1995-10-02
7	Armenia	1993-03-19	1995-01-27
8	Australia	1993-01-13	1994-05-06
9	Austria	1993-01-13	1995-08-17
10	Azerbaijan	1993-01-13	2000-02-29
11	Bahamas	1994-03-02	2009-04-21
12	Bahrain	1993-02-24	1997-04-28
13	Bangladesh	1993-01-14	1997-04-25
14	Barbados		2007-03-07



No.	국가명	서명일자	비준일자
15	Belarus	1993-01-14	1996-07-11
16	Belgium	1993-01-13	1997-01-27
17	Belize		2003-12-01
18	Benin	1993-01-14	1998-05-14
19	Bhutan	1997-04-24	2005-08-18
20	Bolivia	1993-01-14	1998-08-14
21	Bosnia and Herzegovina	1997-01-16	1997-02-25
22	Botswana		1998-08-31
23	Brazil	1993-01-13	1996-03-13
24	Brunei Darussalam	1993-01-13	1997-07-28
25	Bulgaria	1993-01-13	1994-08-10
26	Burkina Faso	1993-01-14	1997-07-08
27	Burundi	1993-01-15	1998-09-04
28	Cambodia	1993-01-15	2005-07-19
29	Cameroon	1993-01-14	1996-09-16
30	Canada	1993-01-13	1995-09-26
31	Cape Verde	1993-01-15	2003-10-10
32	Central African Republic	1993-01-14	2006-09-20
33	Chad	1994-10-11	2004-02-13
34	Chile	1993-01-14	1996-07-12



No.	국 가 명	서명일자	비준일자
35	China	1993-01-13	1997-04-25
36	Colombia	1993-01-13	2000-04-05
37	Comoros	1993-01-13	2006-08-18
38	Congo	1993-01-15	2007-12-04
39	Cook Islands	1993-01-14	1994-07-15
40	Costa Rica	1993-01-14	1996-05-31
41	Côte d'Ivoire	1993-01-13	1995-12-18
42	Croatia	1993-01-13	1995-05-23
43	Cuba	1993-01-13	1997-04-29
44	Cyprus	1993-01-13	1998-08-28
45	Czech Republic	1993-01-14	1996-03-06
46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1993-01-14	2005-10-12
47	Denmark	1993-01-14	1995-07-13
48	Djibouti	1993-09-28	2006-01-25
49	Dominica	1993-08-02	2001-02-12
50	Dominican Republic	1993-01-13	2009-03-27
51	Ecuador	1993-01-14	1995-09-06
52	El Salvador	1993-01-14	1995-10-30
53	Equatorial Guinea	1993-01-14	1997-04-25
54	Eritrea		2000-02-14



No.	국가명	서명일자	비준일자
55	Estonia	1993-01-14	1999-05-26
56	Ethiopia	1993-01-14	1996-05-13
57	Fiji	1993-01-14	1993-01-20
58	Finland	1993-01-14	1995-02-07
59	France	1993-01-13	1995-03-02
60	Gabon	1993-01-13	2000-09-08
61	Gambia	1993-01-13	1998-05-19
62	Georgia	1993-01-14	1995-11-27
63	Germany	1993-01-13	1994-08-12
64	Ghana	1993-01-14	1997-07-09
65	Greece	1993-01-13	1994-12-22
66	Grenada	1997-04-09	2005-06-03
67	Guatemala	1993-01-14	2003-02-12
68	Guinea	1993-01-14	1997-06-09
69	Guinea-Bissau	1993-01-14	2008-05-20
70	Guyana	1993-10-06	1997-09-12
71	Haiti	1993-01-14	2006-02-22
72	Holy See	1993-01-14	1999-05-12
73	Honduras	1993-01-13	2005-08-29
74	Hungary	1993-01-13	1996-10-31



No.	국 가 명	서명일자	비준일자
75	Iceland	1993-01-13	1997-04-28
76	India	1993-01-14	1996-09-03
77	Indonesia	1993-01-13	1998-11-12
78	Iran (Islamic Republic of)	1993-01-13	1997-11-03
79	Iraq		2009-01-13
80	Ireland	1993-01-14	1996-06-24
81	Italy	1993-01-13	1995-12-08
82	Jamaica	1997-04-18	2000-09-08
83	Japan	1993-01-13	1995-09-15
84	Jordan		1997-10-29
85	Kazakhstan	1993-01-14	2000-03-23
86	Kenya	1993-01-15	1997-04-25
87	Kiribati		2000-09-07
88	Kuwait	1993-01-27	1997-05-29
89	Kyrgyzstan	1993-02-22	2003-09-29
90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993-05-13	1997-02-25
91	Latvia	1993-05-06	1996-07-23
92	Lebanon		2008-11-20
93	Lesotho	1994-12-07	1994-12-07
94	Liberia	1993-01-15	2006-02-23



No.	국가명	서명일자	비준일자
95	Libyan Arab Jamahiriya		2004-01-06
96	Liechtenstein	1993-07-21	1999-11-24
97	Lithuania	1993-01-13	1998-04-15
98	Luxembourg	1993-01-13	1997-04-15
99	Madagascar	1993-01-15	2004-10-20
100	Malawi	1993-01-14	1998-06-11
102	Malaysia	1993-01-13	2000-04-20
102	Maldives	1993-10-01	1994-05-31
103	Mali	1993-01-13	1997-04-28
104	Malta	1993-01-13	1997-04-28
105	Marshall Islands	1993-01-13	2004-05-19
106	Mauritania	1993-01-13	1998-02-09
107	Mauritius	1993-01-14	1993-02-09
108	Mexico	1993-01-13	1994-08-29
109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1993-01-13	1999-06-21
110	Monaco	1993-01-13	1995-06-01
111	Mongolia	1993-01-14	1995-01-17
112	Montenegro		2006-10-23
113	Morocco	1993-01-13	1995-12-28
114	Mozambique		2000-08-15



No.	국 가 명	서명일자	비준일자
115	Namibia	1993-01-13	1995-11-27
116	Nauru	1993-01-13	2001-11-12
117	Nepal	1993-01-19	1997-11-18
118	Netherlands	1993-01-14	1995-06-30
119	New Zealand	1993-01-14	1996-07-15
120	Nicaragua	1993-03-09	1999-11-05
121	Niger	1993-01-14	1997-04-09
122	Nigeria	1993-01-13	1999-05-20
123	Niue		2005-04-21
124	Norway	1993-01-13	1994-04-07
125	Oman	1993-02-02	1995-02-08
126	Pakistan	1993-01-13	1997-10-28
127	Palau		2003-02-03
128	Panama	1993-06-16	1998-10-07
129	Papua New Guinea	1993-01-14	1996-04-17
130	Paraguay	1993-01-14	1994-12-01
131	Peru	1993-01-14	1995-07-20
132	Philippines	1993-01-13	1996-12-11
133	Poland	1993-01-13	1995-08-23
134	Portugal	1993-01-13	1996-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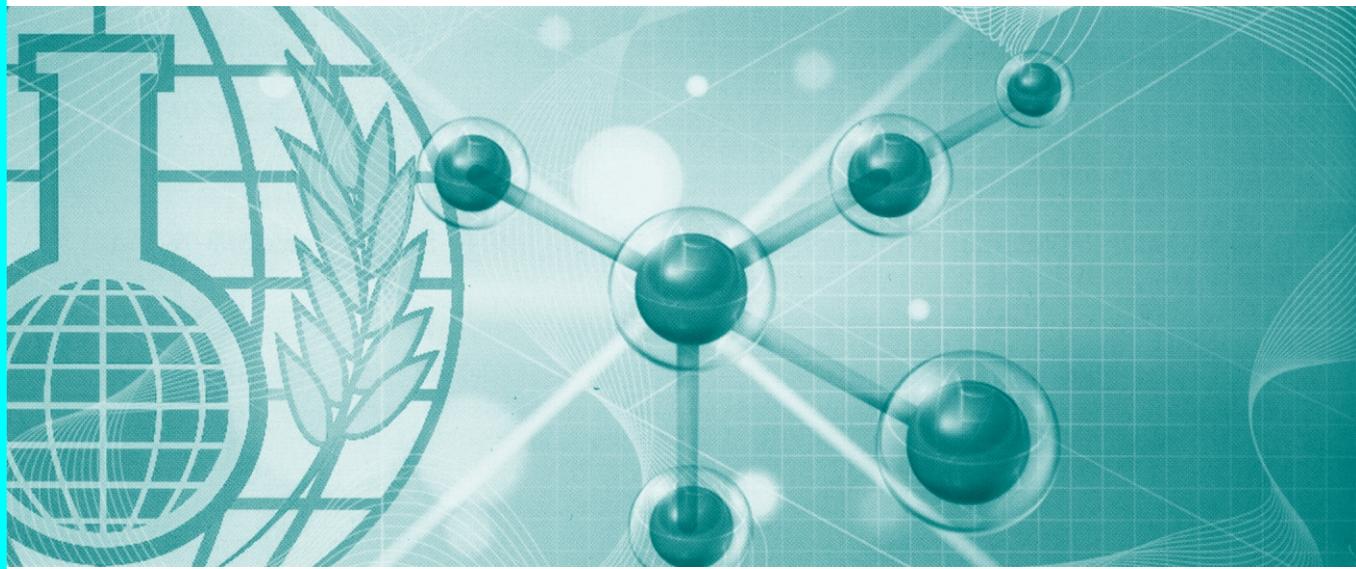
No.	국 가 명	서명일자	비준일자
135	Qatar	1993-02-01	1997-09-03
136	Republic of Korea	1993-01-14	1997-04-28
137	Republic of Moldova	1993-01-13	1996-07-08
138	Romania	1993-01-13	1995-02-15
139	Russian Federation	1993-01-13	1997-11-05
140	Rwanda	1993-05-17	2004-03-31
141	Saint Kitts and Nevis	1994-03-16	2004-05-21
142	Saint Lucia	1993-03-29	1997-04-09
143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993-09-20	2002-09-18
144	Samoa	1993-01-14	2002-09-27
145	San Marino	1993-01-13	1999-12-10
146	Sao Tome and Principe		2003-09-09
147	Saudi Arabia	1993-01-20	1996-08-09
148	Senegal	1993-01-13	1998-07-20
149	Serbia		2000-04-20
150	Seychelles	1993-01-15	1993-04-07
151	Sierra Leone	1993-01-15	2004-09-30
152	Singapore	1993-01-14	1997-05-21
153	Slovakia	1993-01-14	1995-10-27
154	Slovenia	1993-01-14	1997-06-11



No.	국 가 명	서명일자	비준일자
155	Solomon Islands		2004-09-23
156	South Africa	1993-01-14	1995-09-13
157	Spain	1993-01-13	1994-08-03
158	Sri Lanka	1993-01-14	1994-08-19
159	Sudan		1999-05-24
160	Suriname	1997-04-28	1997-04-28
161	Swaziland	1993-09-23	1996-11-20
162	Sweden	1993-01-13	1993-06-17
163	Switzerland	1993-01-14	1995-03-10
164	Tajikistan	1993-01-14	1995-01-11
165	Thailand	1993-01-14	2002-12-10
166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1997-06-20
167	Timor-Leste		2003-05-07
168	Togo	1993-01-13	1997-04-23
169	Tonga		2003-05-29
170	Trinidad and Tobago		1997-06-24
171	Tunisia	1993-01-13	1997-04-15
172	Turkey	1993-01-14	1997-05-12
173	Turkmenistan	1993-10-12	1994-09-29
174	Tuvalu		2004-01-19



No.	국가명	서명일자	비준일자
175	Uganda	1993-01-14	2001-11-30
176	Ukraine	1993-01-13	1998-10-16
177	United Arab Emirates	1993-02-02	2000-11-28
178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	1993-01-13	1996-05-13
179	United Republic of Tanzania	1994-02-25	1998-06-25
180	United States of America	1993-01-13	1997-04-25
181	Uruguay	1993-01-15	1994-10-06
182	Uzbekistan	1995-11-24	1996-07-23
183	Vanuatu		2005-09-16
184	Venezuela	1993-01-14	1997-12-03
185	Viet Nam	1993-01-13	1998-09-30
186	Yemen	1993-02-08	2000-10-02
187	Zambia	1993-01-13	2001-02-09
188	Zimbabwe	1993-01-13	1997-04-25



KSCIA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orea Specialty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501호(키콕스벤처센터)

TEL : (02)3775-2040~4 · FAX : (02)3775-2045

Website : <http://cwc.kscia.or.kr>